

수원지방법원 2023. 1. 20 선고 2020나95938 판결 [점유회수]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3. 1. 20 선고 2020나95938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19가단55998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본승

변론종결 2022. 12. 9.

판결선고 2023. 1. 20.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19가단55998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나. 2)항 부분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11, 15, 16, 18, 19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는 E 및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를 위임받은 E의 언니 L는 E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출입문 잠금장치를 인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게 하였음을 확인해 주고 있는 점, ② 이러한 E의 점유 이전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출입문에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경고문을 부착하고서 출입문을 시정해 두고 있었는데, 그러한 중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출입문 잠금장치를 풀고 들어왔던 점, ③ 위와 같은 유치권 행사 경고문 및 출입문 잠금장치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타인의 지배를 배제하기에 충분한 원고의 점유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유치권 신고가 허위라며 원고의 대표이사가 경매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점(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2037, 2021고단2885) 등을 모아보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들어올 당시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민법 제192조의 점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19. 10. 28.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9. 11. 5. 그 소유권과 점유를 이전해 주어 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에 따른 인도집행을 할 수 없어 이 사건 소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위 매도 전인 2019. 10. 1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었음에도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점유자의 지위에 있고, 따라서 가처분채권자는 가처분채무자의 점유 상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채무자를 피고로 한 본안소송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66. 7. 26. 선고 66다1060 판결,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257, 258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준현, 판사 안희경, 판사 석윤민